

#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(순경) 채용시험 공고

- 일반공채, 101경비단, 전의경경채 -

경찰공무원(순경)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0일

## 경 찰 청 장

### 1. 채용인원 : 1,491명 ( : 명)

분 계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남부	경기북부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	
계	1,491	513	83	11	59	6	6	6	242	215	47	22	24	52	64	62	57	22
반남공채	1,100	303	70	7	45	2	2	2	211	198	40	16	16	36	46	44	44	18
여	121	42	2	2	6	2	2	2	12	8	2	2	2	10	11	10	4	2
전의경경채	150	48	11	2	8	2	2	2	19	9	5	4	6	6	7	8	9	2
101경비단(남)	120	120																

### 2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기 간 : '17. 2. 10.(금)~2. 21.(화) 18:00까지

※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'17. 3. 2.(목)~3. 14.(화)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.

※ 원서접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나. 방 법

- 1)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police.go.kr>)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(3cm×4cm)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2) 응시수수료 5,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.
- 3) 응시표(응시번호 포함)는 '17. 3. 2.(목)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.

### 3. 응시자격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

구 분	응 시 자 격 요 건
령	· : 18세 이상~40세 이하(1976. 1. 1~1999. 12. 31. 출생자) · 전의경경채 : 21세 이상~30세 이하(1986. 1. 1~1996. 12. 31. 출생자) ·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
학 력	학력제한 없음
병 역	·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('17. 6. 4.까지 전역예정자) 단, 전의경경채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'의무경찰순경'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인 자 ※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,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
신 체 조 건	·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(TBPE)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
	· 좌·우 각각 0.8 이상(교정시력 포함)
	·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. 단,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※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(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)
	· 청력이 정상(40dB이하)이어야 함
혈 압	· 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(확장기 : 90-60mmHg, 수축기 : 145-90mmHg)
운전면허	·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

※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# 4. 시험방법

시험구분	시 험 내 용
필기시험	· 일반공채 (101경비단) : 2과목(한국사, 영어) · 선택3과목( 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,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) · 전의경경채 : 한국사, 영어,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
서류전형	·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
신체검사	·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
체력검사	· 100m달리기, 1000m달리기,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 · 좌·우 악력(5개 종목)
적성검사	·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
면접시험	·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

### 5. 시험일시 및 장소

시험구분	시 험 일 시	시 험 장 소 공 지
필기시험	'17. 3. 18.(토) 10:00~11:40(100분)	'17. 3. 10.(금)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지방청별 공지
신체·체력 적성검사	'17. 4. 3.(월)~4. 14.(금)	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
서류전형	'17. 5. 22.(월)~6. 1.(목)	접수 지방청 자체심사
면접시험	'17. 6. 5.(월)~6. 21.(수)	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

※ 문제 이외제기는 '17. 3. 18.(토) 12:00~3. 19.(일) 24: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「이외제기」 코너에서 접수합니다.(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)

※ 문제지 및 가정답은 '17. 3. 18.(토) 12:00, 확정정답은 '17. 3. 21.(화)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자료실(수험자료)에 공지 예정입니다.

### 6. 합격자 결정

시험구분	결 정 방 법(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)
필기시험	· 과목별 4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체력시험	·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%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· 다만,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
적성검사	· 면접시험에 반영
서류전형	·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
면접시험	· 면접시험 총점의 40%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. 다만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(제36조)
최종합격자	· 50%+체력 25%+면접 25%(가산점 자격증 5%)의 고득점자순 결정

### 7. 합격자 발표

시험구분	발 표 일 시	발 표 장 소
필기합격자	'17. 3. 23.(목) 18:00	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
서류전형합격자	'17. 6. 2.(금)	불합격자만 개별통지
최종합격자	'17. 6. 22.(목) 18:00	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

↓  
아래 계속

## 8. 신입교육 및 임용

- 가. 최종 합격자 신입교육 입교는 교육기관의 수용여건을 감안,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고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신입교육(34주)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,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신입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,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**10년간 의무 복무**하여야 합니다.
- 라. 임용 후 순번에 따라 **2년간 기동대근무**(특별경비부서 포함)를 하여야 합니다.

## 9. 참고 및 유의사항

- 가.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**도핑테스트**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채용과정 중 **금지약물**(스테로이드 등) 복용,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,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**최종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- 다.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공채(101단 포함)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 「**조정점수제도**」를 시행합니다.
- 마. **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원본 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, 여권 중 하나)을 **소지**하여야 하며 **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**조치 됩니다. **아울러, 학생증, 자격수첩,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**
- 바.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이고, *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**
- 아.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·누락(취업지원대상자 등) 또는 **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취업지원 대상자는 10% 또는 5%를 각 단계별(필기, 체력, 면접)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,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- ※ 저소득층 대상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.(주소지 주민센터 확인)
- 자. **서류 위·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**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차.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'17. 3. 31.(금)~6. 30.(금)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.
- 카. **원서접수마감은 '17. 2. 21.(화) 18:00까지**이며 **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. **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(응시번호별)의 지정된 시험 장소**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파.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하. 기타 **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